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37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채현일 · 정준호 · 장철민
이재관 · 차지호 · 문진석
이성윤 · 노종면 · 진선미
한민수 · 서미화 · 양부남
허성무 의원(13인)

제안이유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승인의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합격표시를 허위로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능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에 위반되는 문제도 있음.

한편,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실적이 수년간 전무하고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결정된 바 있음.

이에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하여 형식승인 제한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 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안 제39조제1항).
- 다.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단서).
- 라. 소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품목”이란 제7호의 소방용품을 기능·용도 및 구조 등에 따라 분류한 개별 항목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3호”를 “제1호·제3호·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 ②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방용품 외에도 그와 변경승인으로 관련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2호”를 “제1호·제2호·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방용품 외에도 그와 변경인증으로 관련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5. (생략)

<신설>

② (생략)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
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
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5. (현행과 같음)

②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
방용품 외에도 그와 변경승인으
로 관련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 --- 제1호·제
2호·제4호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
방용품 외에도 그와 변경인증으

② (생략)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로 관련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삭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삭 제>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 (생략)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생략)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제49조(청문)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u>및 그 취소</u>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3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3조(수수료 등) ----- ----- -----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u>1.5.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u>	<u><삭 제></u>
<u>질인증을 받으려는 자</u>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